

# 『행복 knowhow 연금예금』 요약 상품설명서

[기본정보]

(2024.08.30기준, 세전)

구 분	내 용			
상품특징	만기희망잔액을 제외한 원금과 이자를 매월 균등하게 분할 지급함으로써 개인의 Cash Flow에 따른 자금운용(생활비, 재투자 등)이 가능토록 한 정기예금			
상품유형	정기예금			
가입대상	실명의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			
계약기간	거치기간과 원리금 지급기간으로 나누어 운용 (①+②) ⇒ ① 거치기간: 1년(선택사항) ② 원리금지급기간: 1년~30년 (연단위 지정, 필수사항)			
가입금액	일백만원 이상 (원단위)			
적 <del>용</del> 금리	② 원리금지급 가 3년제 여 단위 금리번 기간 적용금리	급기간 : '지급기간 개시일' 기상인 경우 '매 3년 해당일 년동)하며, 원리금 재산정 1년 1백만원 이상 3.00%	명형 만기일시지급식 금리 작당시 영업점에 게시한 기간 마다 해당일에 영업점에 2년 1백만원 이상 2.70%	별 금리를 적용하며, 만기 게시한 금리 적용(3년 3년 1백만원 이상 2.70%
이자지급방식	(연율, 세전) 1억원 이상 3.00% 1억원 이상 2.70% 1억원 이상 2.70% 1억원 이상 2.70% 기치기간: 만기일시지급식 (이자계산 일단위) ② 원리금지급기간: 원리금균등지급방식 (완전 원리금균등 및 부분 원리금균등,이자계산 월단위) ※부분 원리금균등지급의 경우 "가입원금-만기희망잔액"에 대하여 동일한 세전 원리금 지급			
세제혜택	0			
예금담보대출	0	납입액의 100%까지 가늉		
예금자보호	0	원금과 이자포함 5천만원까지 가늉		

#### [유의사항]

※ 반드시 아래 사항을 확인하시고 궁금하신 사항은 고객센터 (1599-1111,0,1) 또는 영업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구 분	내 <del>8</del>
이자계산방법	• 가입금액에 예치기간에 따라 약정금리로 계산하여 지급
중도해지금리	<ul> <li>1개월미만 연 0.1%</li> <li>1개월이상 ~ 3개월미만 연 0.15%</li> <li>3개월이상 ~ 1년미만 연 0.2%</li> <li>1년이상 연 0.3%</li> </ul>
만기 후 금리	• 1개월 이내 : 지급 당시 해당기간별 정기예금 월이자지급식 기본금리 ½ • 1개월 초과 : 지급 당시 해당기간별 정기예금 월이자지급식 기본금리 ¼ (단, 가입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3년제 정기예금 월이자지급식 기본금리 적용)

※계작통합관리서비스이용시 불필요한계좌를 정리할 수 있으며, 휴면계좌통합조회서비스이용시 휴면계좌 현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.



## 『행복 knowhow 연금예금』 상품설명서

-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 및 예금상품에 대한 이해 중진을 위하여 예금상품의 주요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한 자료로, 「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 및 관련 규정에 의거 은행의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하는 자료입니다.
- 설명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설명을 이해했다는 서명을 하는 경우(예시:유선가입시는 녹취 기록을 남기시는 경우 등). 추후 해당 내용과 관련한 권리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.
- 인터넷뱅킹 등 비대면채널을 통해 가입하거나 통장 미발행 요청시에는 통장 또는 중서가 교부되지 않습니다.

#### 1 사품 개요 및 특징

- 상품명: 「행복 knowhow 연금예금」
- 상품특징: 만기희망잔액을 제외한 원금과 이자를 매월 균등하게 분할 지급함으로써 개인의 Cash Flow에 따른 자금운용(생활비, 재투자 등)이 가능토록 한 정기예금

## 2 기래 조건

금리 등 아래의 내용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계약 전에 제공되는 자료로 실제 계약 내용은 수령하시는 통장(증서)이나 계약서 또는 비대면 채널의 계좌상세조회에 따릅니다.

이나 계약서 또는	비대면 채널의 계조	·상세조회에 따	가릅니다.	12 1——		(2024	·.08.30 기준, 세전)
구 분	내 용						
가입대상	실명의 개인 및 개인사업자			상품유	2 <b>형</b> 정기	l예금	
거래방법	신규 : 영업점    해지 : 영업점, 인터넷뱅킹, 스마트폰뱅킹			가입금	<b>:액</b> 1백	1백만원 이상 (원단위)	
계약기간	거치기간과 원리금 지급기간으로 나누어 운용 (①+②) ⇒ ① 거치기간: 1년(선택사항) ② 원리금 지급기간: 1년 ~30년 (연 단위 지정, 필수사항)						
계약기간 변경	불가						
이자지급방식	① 거치기간: 만기일시지급식 (이자계산 일단위) ② 원리금지급기간: 원리금균등지급방식(완전원리금균등및 부분원리금균등,이자계산 월단위) ※부분 원리금균등지급의 경우 "가입원금-만기희망잔액"에 대하여 동일한 세전 원리금 지급						
71 11 22 21	① 거치기간: 기간별 고단위플러스 확정형 만기일시지급식 금리 적용 ② 원리금지급기간: '지급기간 개시일' 당시 영업점에 게시한 기간별 금리를 적용하며, 만기가 3년제 이상인 경우 '매 3년 해당일 ' 마다 해당일에 영업점에 게시한 금리 적용(3년 단위 금리변동)하며, 원리금 재산정						
기본금리	기간	1է	<u> </u>	2	년		3년
	적용금리 (연율, 세전)	1백만원 이 1억원 이싱			미상 2.70% 당 2.70%	1백만원 1억원 이	이상 2.70% 상 2.70%
	기간	1개월미만	1개월이상~	3개월미만	3개월이싱	~1년 미만	1년 이상
중도해지금리	중도해지금리 (연율, 세전)	0.10%	0.15	%	0.2	10%	0.30%
	<ul> <li>1개월 이내 : 지급 당시 해당기간별 정기예금 월이자지급식 기본금리 ½</li> <li>1개월 초과 : 지급 당시 해당기간별 정기예금 월이자지급식 기본금리 ¼</li> </ul>						
만기 후 금리		당시 해당기간별 정  자지급식 기본금			급 당시 해당기긴 월이자지급식 기		<b>→</b>

만기 후 1개월 이내

1개월

만기 후 1개월 초과

만기희망잔액	• 고객이 매월 필요한 금액을 수령한 후 만기에 찾고자 하는 금액 - 만기희망잔액이 0일 경우: 전체 예금액을 매월 분할하여 지급받는 효과 - 최초 예금액과 동일할 경우: 정기예금 월이자지급식과 동일한 효과 - 만기희망잔액은 변경 가능하며, 이 경우 원리금은 재산정		
이자계산방법	가입금액에 신규일부터 해지일 전일까지 기간에 약정금리로 계산하여 지급		
일부해지	거치기간 동안에만 총 3회까지 가능 (법적제한이 있는 경우 일부해지 불가) ※ 일부해지 후 잔액이 최소 가입금액 1백만원 이상인 경우에 한하며, 일부해지 금액에 대해서는 중도해지금리를 적용합니다.		
원금 및 이자지급 제한	<ul> <li>계좌에 압류, 가압류,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지급 제한 (일부해지 포함)</li> <li>※ 민사집행법에 따라 최저생계비 이하 등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 신청 등을 통해 압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.</li> <li>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에는 잔액 변동 불가</li> </ul>		
세제혜택	비과세종합저축 가능(전 금융기관 통합한도 범위 내) ※ 관련 세법이 개정될 경우 세율이 변경되거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, 계약기간 이후의 이자는 과세됩니다.		
양도 및 담보제공	은행의 승낙을 받은 경우 양도 및 질권설정이 가능     예금담보대출은 만기희망잔액 범위 내에서 가능 ※ 만기희망잔액은 변경이 가능합니다.		
계약해지방법	<ul> <li>영업점, 비대면채널(인터넷뱅킹,스마트폰뱅킹) 및 자동 만기해지 서비스를 이용하여 해지 가능</li> <li>※ 비대면 채널에서의 해지는 일부 제한사항이 있으니 사전에 확인 바랍니다.</li> <li>만기가 휴일인 경우 직전 영업일에 해지가 가능하며(중도해지가 아닌 만기해지로 적용), 실제 해지일 전일까지의 이자를 계산하여 지급</li> </ul>		
통장발행	통장 미발행 가늉		
연계 · 제휴서비스	해당사항 없음		
휴면예금 및 출연	• 예금 만기일 또는 이자지급을 포함한 최종거래일 이후 5년 이내 계좌를 해지하지 않을 경우 예금거래기본약관 제9조의2 휴면예금 및 출연에 따라 휴면예금은 "서민금융진흥원 (국번없이 1397)"에 출연될 수 있으며, 이 경우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휴면예금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. • 휴면예금은 휴면예금통합조회서비스(www.sleepmoney.or.kr)를 통해 조회 가능합니다.		
위법계약해지권	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위법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,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 범위에서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 이 경우 금융회사는 해지를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금융소비자에게 수락 여부를 통지하여야 하며, 거절할 때에는 거절사유를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. 만약 금융소비자의 요구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수수료 등 계약해지와 관련한 추가 비용 부담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.		
자료열람요구권	금융소비자는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은행이 기록 및 유지·관리하는 다음의 자료에 대한 열람(사본 및 청취 포함)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     - 계약체결에 관한 자료, 계약의 이행에 관한 자료, 금융상품 등에 관한 광고 자료, 금융소비자의 권리행사에 관한 자료,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자료, 업무 위탁에 관한 자료     은행은 법령, 제3자의 이익 침해, 영업비밀의 침해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금융소비자에게 알리고 자료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.		
민원처리 및 분쟁조정 절차	본 상품에 대한 문의사항 또는 민원 상담이 필요하시면 영업점, 고객센터 (1599-1111,0,1), 고객의 소리 (080-933-1111),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(www.kebhana.com)를 통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. 또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금융감독원 민원상담 센터 (국번없이 1332) 또는 e-금융민원센터(http://www.fcsc.kr)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		
예금자보호여부	해당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보호금융상품 1인당 최고 5원만원 1인당 최고 5원만원		

## 3 유의사항

• 법적 제한이 있는 경우 원리금분할지급은 중지됩니다.

이 예금은 하나은행 리테일상품부에서 개발한 금융상품입니다. 상품문의는 영업점 또는 고객센터 (1599-1111,0,1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### 부록: 예금상품 설명을 위한 관련 용어 안내

용어	설 명
압류	• 채무자의 특정한 재산에 대하여 처분(매매, 양도 등)을 금지하게 하는 법원의 조치로서, 채권자가 개 채무자의 해당 재산을 금전화하여 채무 변제에 충당하려는 목적으로 이용됩니다.
가압류	• 법원이 채권자를 위하여 나중에 강제 집행을 할 목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임시로 확보하는 행 위입니다.
질권설정	• 채무자가 변제기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설정자(담보물 소유자)가 제공한 담보물에 대하여 채권자가 직접 청구하여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설정하는 것으로써 일반적으로 담보물이 동산 또는 권리(예·적금, 채권 등)인 경우에 활용됩니다.
출연	<ul> <li>어떤 사람이나 단체가 자기의 의사에 따라 돈을 내거나 의무를 부담함으로써 재산상의 손실을 입고 남의 재산을 중가시키는 일을 말합니다.</li> <li>일반적으로 기부행위를 일컫는 말로 사용되나 법률적으로는 비영리재단법인에 재산을 무상으로 내는 행위를 뜻합니다.</li> </ul>
경과기간	• (해당 시간을) 완전히 지나간 기간 *(예시) 입금일부터 해지일까지 지나간 기간